



교원연구학기제 내규

제정일	2005. 3. 1
개정일	2023.12. 1
개정차수	11차
담당부서	학사운영과

제 1조 (목적) 이 내규는 동서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전임교원에게 일정한 기간 수업을 전부 또는 부분 면제하고 국내·외에서 연구 활동 또는 산업체연수, 창업연수(이하 “연구” 라 한다)에 전념케 함으로써 전공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학문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교원 연구학기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1, 2017. 4 .1, 2022. 7. 1)

제 2조 (연구학기제 기간 및 방법) ① 연구학기제 기간은 학기단위로 시행한다.

② 일반연수 및 해외연수의 연구학기제참여 교원은 국내·외 교육기관 및 연구소 등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③ 산업체연수의 연구학기제 참여 교원은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기술내용과 변화를 습득하여 지도능력과 실무경험을 쌓는다. (개정 2022.12. 1)

④ 연구학기제(산업체연수)의 경우, 학과의 사정을 감안하여 학기당 책임시수 1/3이하의 강의와 학생지도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2. 1)

[전문개정 2022. 7. 1]

제 3조 (기간의 연장) ① 연구학기제 중인 교원이 특별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연구학기제 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연구경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학사운영과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연장기간은 1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2.13, 2014.11. 1, 2017. 4 .1, 2022. 7. 1)

② 기간연장에 의한 연구학기제 기간은 횟수에 포함한다.

제 4조 (자격 및 선발 우선순위) ① 연구학기제 해당자의 자격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일반전임교원(이하 “교원” 이라 한다)으로서 임용된 후 계속하여 5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2. 7.22, 2022.12. 1)

② 연구학기제는 재직 중에 2회(2개 학기)에 한하여 허가 하며, 자격은 전회 연구학기가 종료된 후 5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③ 정년퇴직 시까지의 잔여 재직 년 수가 3년 미만인 교원에게는 연구학기제를 부여하지 않는다. 단, 특별히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2.13)

④ 선발기준 (신설 2014. 7. 1, 개정 2014.12. 1)

1. 근속년수 : 30% (개정 2014.12. 1, 2023.12. 1)

2. 최근2년간 교수 업적평가 : 40% (개정 2014.12. 1, 2017. 4. 1, 2023.12. 1)

3. (삭제 2017. 4. 1)

4. 연구계획서 : 30% (신설 2014.12. 1, 개정 2023.12. 1)

⑤ 선발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2. 1)

[제목개정 2014. 7. 1]

제 5조 (인원의 제한) ① 학기별 연구학기제 교원 수는 교원 현원의 3% 이내로 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신청교원의 학교발전에 대한 공헌도, 재직년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연구학기제 교원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③ 총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상기의 여건이 모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본교 여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학기제 교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제 6조 (신분 및 처우) ① 연구학기제 중인 교원은 본교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한다.

② 교원의 연구학기제 기간은 근속연수에 삽입한다.

③ 연구학기제 기간 중의 급여는 보수의 100%를 지급한다. 단, 실비 보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학사지도비는 제외하며, 제2조 제4항에 따른 별도의 강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9. 2.13, 2014. 5. 1, 2014.12. 1, 2022.12. 1)

제 7조 (신청절차 및 선정) ① 연구학기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학기제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학기제 부여 1개월 전까지 학사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 2014.11. 1, 2019.10. 1)

② 신청자에 대하여는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학기제 부여시기 15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13, 2019.10. 1)

제 8조 (의무) ① 연구학기제 교원은 기간 종료 후, 즉시 본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② 연구학기제 교원은 국내외의 타 대학이나 교육기관에 출강할 수 없으며,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③ 일반연수 및 해외연수의 연구학기제 교원은 복교 후 30일 이내에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연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연구 증빙자료를 학사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종료 후 동일한 주제로 1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거나 2년 이내에 해외 SCI 또는 SCIE해당 저널에 게재하여야 한다. 단, 예능 관련 학과의 교수는 연구학기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주, 발표, 전시 등을 하여 논문게재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 2014. 12. 1, 2017. 4. 1, 2022. 7. 1)

④ 산업체 연수의 연구학기제 교원은 복교 후 30일 이내에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연구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연구 증빙자료를 학사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 개정 2022. 7. 1)

⑤ 연구학기제 교원은 복교 후,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본교에 근무하여야한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 제5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교원은 연구학기제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추후 연구학기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한다. (개정 2017. 4. 1, 2022. 7. 1)

제 9조 (파견과의 관계) 국비 국내·외파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기관의 국내·외파견에 선발되거나 국내·외 교환교수로 파견(6개월 이상)될 경우 해당기간에 한하여 연구학기제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사무) 본 내규에 관련된 사무는 학사운영과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4.11. 1)

제11조 (보칙)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2.13)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6조 제3항 급여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6조(신분 및 처우) 제3항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2월 1일 이후 선발된 교원(기간의 연장 포함)부터 적용하되, 현재 진행중인 연구학기제 교원의 급여는 종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7. 4. 1, 2017. 4. 1, 2022.12. 1, 2023.12. 1)

연구학기제 지원신청서

경 유	학부(과)장

소 속		직(급)위	
성 명		생년월일	-
임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구 분	【일반연수】	【산업체연수】	【창업연수】 【해외연수】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연구과제			
신청목적			
수업 희망여부	O, X	수업 시수 (예정)	시간
※ 연구학기제(산업체연수)의 경우, 학과의 사정을 감안하여 학기당 책임시수 1/3 이하의 강의와 학생지도 가능 (교원연구학기제 내규 제6조의 제3항에 따라 별도의 강의료는 지급하지 않음)			
<p style="text-align: center;">학년도 제 학기 교원 연구학기제 교원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발될 경우 교원 연구학기제 내규에 따라 성실하게 연 구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p> <p>붙 임 : 1. 연구기관승인서 2. 서 약 서</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동서울대학교총장 귀하</p>			

【붙임 서식 2】(개정 2014. 7. 1)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급) :

생 년 월 일 :

성 명 :

상기 본인은 연구학기제 대상 교원으로 선정됨에 있어 연구학기제 수행기간 동안 성실하게 맡은 바 과제를 수행할 것과 교원 연구학기제 규정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연구학기제 기간동안 지급된 보수의 반환은 물론 본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동서울대학교총장 귀하

연구 계획서

1. 신청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급)	
성 명		생 년 월 일	
연구기간 중 연락처	주 소		
	전 화		
연 구 기 간			

2. 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 계획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기 타	【산업체와의 약정이 있는 경우 등은 자세히 작성할 것】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결과 보고서

연구기관				
연구과제				
연구기간	 ~		
인적사항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 예시】

목 차 (예시)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II. 본 론

1. 연구와 관련된 현황 분석
2. 연구의 구체적 내용
3. 연구의 시사점 및 기대 효과

III. 결 론

1. 본교(수업)에의 적용 방안
2. 산업체에의 적용 방안

참고문헌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4. 7. 1, 2017. 4. 1)

연구학기제 기간연장신청서

연구학기제 기간연장신청서				경 유	학부(과)장
소 속		직(급)위			
성 명		생년월일	-		
구 분	【일반연수】	【산업체연수】	【창업연수】	【해외연수】	
연구과제					
당초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연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연장사유	<p>상기 본인은 연구학기제 교원으로 선정되어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이나 부득이 연구기간을 연장하여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학기제 내규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p> <p>붙 임 : 1. 연구기관 승인서 2. 서 약 서 3. 연구경과 보고서</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동서울대학교총장 귀하</p>				
심의위원회 의 견		판정	【可】 【否】		
심의 위원 서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7. 4. 1)

연구경과 보고서

연구기관			
연구과제			
연구기간 ~		
인적사항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 예시】

목 차 (예시)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II. 본 론

1. 연구와 관련된 현황 분석
2. 연구의 구체적 내용(6개월 연구 내용)
3.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